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63호로 2024년 5월 31일 이순우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 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악취실태조사(안 제5조)

다. 지도감독(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악취방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5. 16. ~ 5. 20.)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에 조문을 살펴보면,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이 주된 요지임에 따라 제명이 조례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배출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지도·감독)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검토결과

- 2020년7월 우리 구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9개 지역 빗물받이 469개소에 ‘하수악취 저감 탈취제 투입 사업(총22회)’,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수악취 저감 탈취제 투입사업 실적				
	2021	2022	2023	2024
투입 지역(개)	6	9	9	9
투입 빗물받이(개)	287	388	469	469
투입 횟수(회)	20	22	22	22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실적				
악취저감시설	2021	2022	2023	2024
설치대수(대)	45	2	10	48
소요예산(천원)	75,759	3,569	20,700	158,400

- 이러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활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생활악취는 두통·메스꺼움 등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불쾌한 생활악취는 문화도시 영등포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을 정비 및 보강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감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 1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